www.poli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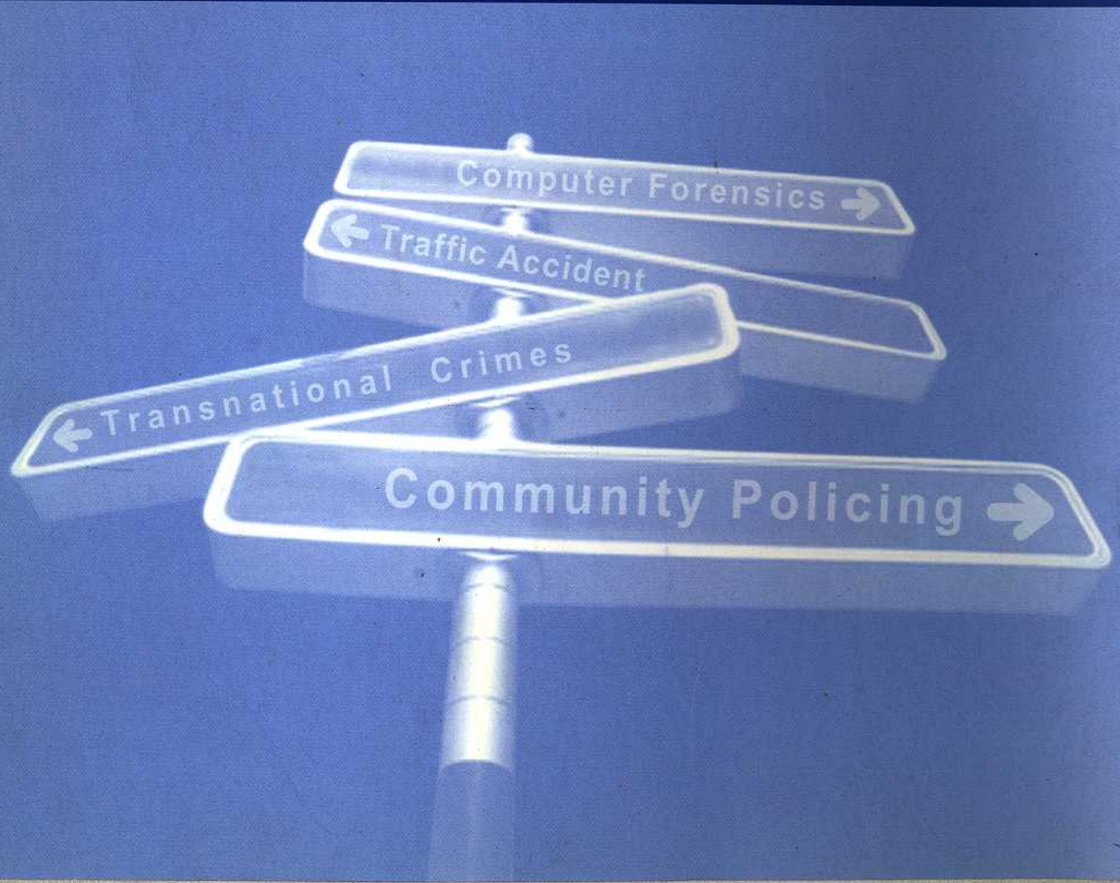


32 외사4-1 SOFA 사건 처리 매뉴얼

경찰청

기본(일반)매뉴얼 제32호
관리번호 : 외 사 4-1

# SOFA 사건 처리 매뉴얼

National Police Agency

경 찰 청

www.police.go.kr

기본(일반)매뉴얼 제32호
관리번호 : 외 사 4-1

# SOFA 사건 처리 매뉴얼

경 찰 청
www.police.go.kr

# 「SOFA 사건 처리 매뉴얼」을 펴내며

금년은 우리경찰이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금까지의 경찰활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일류경찰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일반 외국인 범죄와는 달리 SOFA 사건은 미군 등에 의한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과 시민단체 및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SOFA 사건 발생시 경찰의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FA 사건 발생시 최초로 대응하는 우리경찰이 올바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SOFA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습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SOFA 사건 처리 매뉴얼」은 SOFA 사건 처리절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건발생시 현장수사 대응능력 및 범죄유형별 처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실무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SOFA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SOFA 사건처리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2005년 6월**

**경찰청 외사3과**

# Contents




## 제 1 장 SOFA 개요

제1절 정 의 ..... 3
제2절 적용범위 ..... 4
제3절 형사재판권 분장 ..... 6

## 제 2 장 SOFA 사건 처리절차

제1절 지구대에서의 처리 ..... 11
제2절 경찰서에서의 처리 ..... 15
제3절 단계별 처리도 및 사례 ..... 29

## 제 3 장 SOFA 사건 수사시 유의사항

제1절 일반적 유의사항 ..... 39
제2절 죄종별 유의사항 ..... 42

## 제 4 장 외국인 피의자 처리요령

제1절 외교사절에 의한 범죄 처리요령 ..... 49
제2절 일반외국인 범죄 처리요령 ..... 51

## 부 록

1. 관련양식 등 ..... 55
2. SOFA 관련규정 ..... 69

# 제 1 장 SOFA 개요

제1절 정 의

제2절 적 용 범 위

제3절 형사재판권 분장

# 제1장 SOFA 개요

## 제1절 정 의

### 1. 명 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란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 주둔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체결하는 조약을 말함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며, 보통 「한미행정협정」으로 알려졌으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라고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함

> SOFA는 1966. 7. 9. 체결되었으며,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2. 내 용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출입국·관세·시설 및 구역의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청구권, 기타 조세·외환·우편 및 통신 등 각 분야의 문제를 규율

☞ 본 매뉴얼은 이 중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부분만을 다룸

### 3. 구 성

「협정」, 「합의의사록」 및 「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등

## 4. 연 혁

○ 1948. 8. 24.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체결

○ 1950. 7. 12. 한·미각서 교환 형식으로 '주한 미군대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협약'(이른바 대전협정) 체결

○ 1953. 10.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서명(1954. 11. 18. 발효)

○ 1966. 7. 9. 'SOFA 협정' 서명(1967. 2. 9. 발효)

○ 1991. 2. 1. '합의양해사항' 개정(1차 개정)

○ 2001. 1. 18.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개정(2차 개정)

# 제2절 적용범위

## 1. 인적 적용범위(협정 제1조, 제15조)

### 가. 미국 군대의 구성원(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1)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미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공무로 와 있는 사람으로 국한, 휴가중 방한한 자는 배제

(2) 대사관 부속 군인, 군사고문단협정 규정 인원은 제외(외교관 대우를 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적용)

☞ 카투사근무자는 주한 미육군에 예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SOFA 대상자가 아님



### 나. 군 속(civilian component)

(1)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2)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미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미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미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근무하거나 동 군대를 동반하는 제3국 국민(합의의사록 제1조)

### 다. 가 족(dependents)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라.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

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통상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가족, 미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미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정절차를 거친 자

## 2. 장소적 적용범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

나. 미군 당국은 미군 구성원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 제3절 형사재판권 분장

## 1. 재판권 분장의 원칙(협정 제22조 제1항)

### 가. 미군 당국의 재판권

미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미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 보유

### 나.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보유

## 2. 전속적 재판권

### 가. 미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1) 미국 법령으로만 처벌 가능한 범죄

(2)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 ◦ 미군 당국은 미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22조 제1항 (나))
>
> ◦ 미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합의의사록)



### 나. 대한민국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1) 대한민국의 법령만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

(2)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22조 제2항 (나))

## 3. 경합적 재판권

### 가. 미군 당국의 1차적 재판권(협정 제22조 제3항 (가))

(1)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보유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보유

(2)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 미8군 소속 소령 리처드ㅇㅇ(45세, 남)는 '03. 8. 9. 용산 기지 국내 주거지에서 처 페트리셔ㅇㅇ(45세, 여)를 살해한 후 비닐로 포장하여 피의자 소유 승용차 뒷자석에 옮겨 싣고, 8. 12. 03:40경 인천 영종대교에서 아래로 던져 유기
>
> **⇒ 112신고로 피의자 검거, 인천 서부서에서 미군헌병대와 함께 현장조사 후, 미군에 피의자 체포사실 통고, 피의자 및 사체 미군에 인계**

(3)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 미군 당국이 발행한 공무 집행증명서는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 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미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 공무집행여부는 미군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로 판단하나, 추후 재검토 될 수 있음

### 나. 재판권의 포기

(1)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함(협정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호)

(2) 특히 중요한 사건 여부는 개개 사건별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판단(합의양해사항 1991. 2. 1.)

### 다. 재판권 행사통보의 시한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협정 제22조 제3항 (다)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제4호)



# 제 2 장 SOFA 사건 처리절차

제1절 지구대에서의 처리

제2절 경찰서에서의 처리

제3절 단계별 처리도 및 사례

# 제2장 SOFA 사건 처리절차

## 제1절 지구대에서의 처리

### 1. 신고접수

가. SOFA 대상자에 대한 범죄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현장출동

(1) 2인 이상 출동, 경찰장구 외 통신장비도 휴대

(2) 현장출동 도중, 주변 미군 인상착의 등을 메모하거나 불심검문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

나. 외국인이 직접 신고시는 경찰 통역전화기 또는 민간통역단체 「BBB 서비스」(1588-5644) 활용, 신고 접수

**< 통역 전화기 >**

◦ 외국인들의 범죄·민원 신고에 대한 편의도모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3자 통화 방식의 통역전화기를 전국 경찰관서 112지령실(상황실), 국제 공·해항 등에 설치·운영중임

◦ 외국인이 112 전화를 이용해서 경찰관서에 전화를 할 경우, 경찰관·외국인·통역사가 전화상으로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며, 경찰관이 외근활동 근무 중 외국인과 접촉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도 이용가능함

◦ 통역언어 및 이용방법
- 전국 국번 없이 112 전화 버튼을 누름
- 경찰관이 "통역사와 연결중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안내
- 신호 대기음이 들리면 끊지 않고 기다림
- 잠시 후, 통역사 및 경찰관과 3자 동시 전화 통화

**< BBB 서비스 >**

BBB(Before Babel Brigade) 서비스는 민간 통역지원 단체가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로 KT 3인 통화 기능을 신청한 후 대표전화 1588-5644로 전화하면 17개국어 통역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2. 초동조치

가. 현장에 도착, 현행범체포 등의 절차에 따라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의자 신병확보

**< 현행범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사항 >**

귀하는 ㅇㅇ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As a flagrant offender of ㅇㅇcrime,
애즈 어 플레이그런트 어펜더 어브 ○○ 크라임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you are under arrest without a warrant pursuant to Article 21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유 아 언더 어레스트 위다웃 어 워런트 퍼슈언트 투 아티클 투헌드레드 투웰브 어브 더 크리미널 프러시져 로

귀하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유 해브 더 라잇 투 리메인 싸일런트

귀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You hav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have him/her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유 해브 더 라잇 투 어포인트 어 로이어 앤 해브 힘/허 프리젠트 위드 유 와일 유 아 빙 퀘스천드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he right to speak for yourself.
유 해드 더 라잇 투 스피크 포 유어셀프



나. 부상자 구호 및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인적사항과 피해사항 확인

다. 현장에서 피해품, 범인의 유류품 등 증거물 확보

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일시·장소, 피해자, 피해품, 피의자 인상착의, 사건 경위 내용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보고

☞ 도주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착의, 휴대품, 도주방향 등을 상황실에 보고하여 도주로 차단, 검거

'03. 11. 28. 00:10경 경기 오산시 천일사거리에서 미군 6기갑여단 소속 중사 온켄ㅇㅇ(33세, 남)이 음주 후, 개인자가용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한국인 차량을 충돌, 한국인 1명 사망, 4명 중상 야기 후 도주

**⇒ 112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버리고 도주한 가해차량에서 미군 신분증과 철모 등을 확보하여 용의자 신원확인 후, 미군 헌병대와 공조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여 11. 28. 05:30 부대에서 취침중인 피의자를 검거**

## 3. 지구대로 피의자 동행

가. 동행시 피의자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나. 피의자를 지구대로 동행하면 신분증을 제시받아 SOFA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 경찰서로 신병인계

☞ 피의자가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사실 규명 필요성 및 검찰과 협의해야 함을 설득하여 경찰서로 동행

## < SOFA 사건 처리시 지구대 점검 항목>

| 단계 | 점 검 항 목 | 확인 | | 비고 |
|---|---|---|---|---|
| | | YES | NO | |
| 신고접수 | 2인 이상 출동하고 경찰장구 외 통신장비도 휴대하였는가 | | | |
| | 현장출동 도중 주변 미군에 대한 불심검문 등 인적사항 확인 등에 유의하였는가 | | | |
| 초동조치 | 피의자 신병확보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가 | | | |
| |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는 하였는가 | | | |
| | 피해자, 참고인 등 인적사항 파악 및 증거물 등은 확보하였는가 | | | |
| | 피의자가 SOFA 대상자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였는가 | | | |
| | 피의자 경찰서에 인계시,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는가 | | | |



# 제2절 경찰서에서의 처리

## 1. 기초사실 조사

가. 경찰서로 동행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SOFA 대상자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소속 · 계급 · 성명 · 생년월일 · 범죄사실 등 기초사실조사서 작성 및 신분증 사본하여 첨부(범죄기초조사서 양식 붙임1)

나.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에 보고 및 24시간 이내에 검찰청(SOFA 담당검사)에 SOFA사건 발생보고(발생보고서 양식 붙임2)

< SOFA 대상 미군 신분증 양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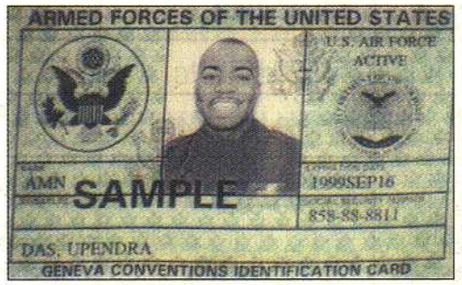


미군신분증 양식(舊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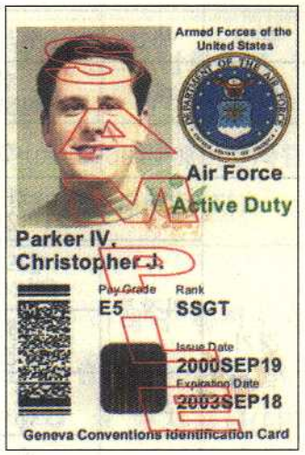


미군신분증 양식(新형)

☞ 현재는 신 · 구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2. 체포사실 통고

가.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에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함

☞ 체포사실의 통고는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함(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1. 1. 18)

나.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전국 미군헌병대 연락처>**

| 지방청 | 지역 | 부 대 명 | 연 락 처 | 비고 |
|---|---|---|---|---|
| 서울 | 서울 | 미8군 헌병대 | 02)797-4096/4397 | |
| 부산 | 부산 | 캠프 하야리아 | 051)801-7338 | |
| 대구 | 대구 | 캠프 워커<br>(188헌병중대) | 053)476-5268 | |
| 경북 | 왜관 | 캠프 캐롤 | 054)970-8310 | |
| 경기 | 동두천 | 캠프 케이시<br>(미2사단 1여단) | 031)869-4418/4419 | 경기북부,<br>춘천 |
| | 의정부 | 캠프 레드클라우드<br>(미2사단 사령부) | 031)870-6898<br>031)870-6028 | 의정부 |
| | | 캠프 스탠리<br>(미2사단 항공포병여단) | 031)870-5489 | 의정부<br>송산동 |
| | 오산 | 오산 에어 베이스<br>(오산 미공군기지 K-55) | 031)661-6823 | 오산기지<br>주변 |
| | 평택 | 캠프 험프리즈<br>(미육군3지역사령부 K-6) | 031)691-0113 | 경기남부 |
| 강원 | 원주 | 캠프 롱 | 033)738-3325 | |
| 전북 | 군산 | 공군제8전투비행단 | 063)470-4946 | |
| 전남 | 광주 | 미헌병대 728대대<br>188중대 파견소대 | 062)940-6707 | |
| 경북 | 왜관 | 캠프 캐롤 | 054)970-8310 | |
| 경남 | 진해 | 진해함대지원부대 | 055)540-5345 | |



## 3. 범죄현장에서의 수사(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2. 12. 30)

가. SOFA 적용대상 범죄현장에서 미군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 측의 협조를 얻어 독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용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나.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때에는 미군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현장조사를 희망할 경우 협조 제공

## 4.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가. 미국 정부대표 입회하에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전 수사 가능

>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미국 대표의 입회하에 미국 군대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을 신문할 수 있으며, 체포 후 신병을 미군 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 (다))

나. 미국 정부대표는 하루 중 언제라도 1시간 이내에 출석하게 되어 있으므로, 야간이라도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을 적극 요구하여 SOFA 적용대상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 전 조사시행(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2. 12. 30)

> 주한미군의 자녀인 브룩스ㅇㅇ(20세, 남)는 '01.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뒷골목에서 대마초를 흡입하고, '01. 4. 19. 용산구 주성동 소재 친구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2회에 걸쳐 마약류 흡입

⇒ '01. 4. 27. 피의자 검거, 미대표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미헌병대에 신병인계, 이후 출석요구하여 5. 17. 피의자 긴급체포하고 같은날 미군당국이 피의자 신병인수 거부서를 제출

## 5.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가. 체포사실 통고를 받은 미군당국이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미군당국으로부터 '구금인도요청서'를 제출받고 '신병인수증'을 작성한 후 신병인도(구금인도요청서 및 신병인수증 양식 붙임3)

☞ 피체포자 인적사항 및 인수일시, 신병을 인수한 미군의 기관명, 신병을 인수한 자(가급적 장교)의 계급, 군번,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한 신병인수서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미군당국이 체포된 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헌병감은 그러한 요청을 기재한 일정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금중인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1. 1. 18)

나. 신병인도 후 출석요구로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미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협정 제22조 제5항 (다))



## 6. 체포 후 계속 구금

가. SOFA 대상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미군당국의 인도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신병을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당국이 계속 구금
(협정 제22조 제5항 (다))

나. 그러나,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피의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을시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검사와 협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체포 후 계속 구금」 할 수 있음

☞ 2001. 1. 18. SOFA 2차 개정 사항

(1) 체포 후 계속 구금의 요건으로는

- 대한민국 당국이 SOFA 대상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미군 통제구역으로의 복귀전에 체포
-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
-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2) 체포 후 계속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로 정의되는 사건의 유형은 추후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결정전까지는 양국 정부가 사건별로 합의하여 처리함(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1. 1. 18)

※ '05. 5. 20. 현재 체포 후 계속 구금의 대상이 되는 세부 사건의 유형은 결정된 바 없음

다.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해야 함(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 7. 출석요구

### 가. 출석요구서 발부

(1) SOFA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 뿐만 아니라 미군·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 신분을 가진 참고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며(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2. 12. 30)

(2) 출석요구서는 관할 미헌병대장에게 서면으로 발부(출석요구서 양식 붙임4)

(3)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소속·계급·전화번호·출석장소·출석시간 등을 명시하고, 미군당국의 공휴일 및 국경일은 가급적 피하며 가급적 48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발송함

주한미군 자녀인 코트니ㅇㅇ(19세, 남)는 '00. 9. 21.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내국인 박ㅇㅇ(21세, 여)에게 폭력 행사, 9. 24. 영업용 택시에서 현금 14,000원 절취, 10. 26.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방에서 메이슨ㅇㅇ(15세, 여, 미국)을 공범 3명과 함께 강간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년 11. 4. 22:00 용산구 한남동 앞 노상에서 변ㅇㅇ(17세, 여)의 핸드백을 절취하려다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폭행

**⇒ 피의자는 미군가족으로 SOFA 대상자인 바, 강도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미군당국에 신병인계 되었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출석요구 수사하고, 죄질이 나빠 미군당국에서 신병인수 거부서를 제출하여, '00. 11. 7. 긴급체포하여 구속수사**



## 8. 피의자 조사

### 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1) 미국 정부대표를 출석케 하여 대표임명장을 접수한 후, 미국 정부대표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조사실시
(미국 정부대표 임명장 양식 붙임5)

(2) 미국 정부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미국 정부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신문에도 개입할 수 없음(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양해사항)

(3) 조서는 한국어로 기재하되, 소속과 성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

(4) 피의자신문은 범죄수사규칙 제217조(조서의 작성) 준용

### 나. 피의자 신문조서의 서명

(1) 조서말미에 입회한 통역과 미국 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을 받음

(2) 미국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음(협정 제22조 제9항 (사)에 관한 합의의사록)

(3)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8조 및 제244조에 따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의사에 반해 서명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합동위원회 합의사항 2002. 12. 30)

(4) 단,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조사관의 서명·날인과 미국 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이 있는 한 일반적인 효력에 영향 없음

(5) 피의자 신문조서의 서명은 외국인의 서명 날인에 관한 법률 준용

<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사항 >

- 부대명(Unit) : 피의자가 미군, 군속 또는 초청계약자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명을 번역한 한글로 기재,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자의 소속 기재
- 계급(Rank) : 현역 미군의 경우에는 성명 좌측에 계급을 명시, 군속·초청계약자·가족의 경우에는 성명 좌측에 신분명 기재
- 성명(Full Name) : 성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 다. 통역인 참여

(1) 통상 미군 당국에서 통역인을 동행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별도로 반드시 통역인을 참여케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2) 담당 경찰관이 영어에 능통하더라도 직접 영어로 신문해서는 안되며 통역인을 참여케하여 신문하여야 함

### 라. 변호인 참여

(1) 미군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변호인의 참여시까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외에 피의자를 신문하여서는 안됨

(2) 체포시부터 변호인 참여시까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청구시한(48시간)이 일시 정지됨을 고지

(3)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로부터 포기서에 서명을 받고 미국 정부대표에게도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동 포기서에 연명으로 서명케 함(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 9. 기소시 신병인도 구속

### 가. 살인 등 12개 중요범죄를 범한 SOFA 대상자는 기소시 또는 그 이후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가능

(1)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 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함

☞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신병인도는 기소시 또는 그 이후에 해당하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

(2)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함

(3) 재판 전 구금의 "필요"라 함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또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 잠재적 증인, 또는 그들의 가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이유로 피의자의 구금이 요구된다는 사법적 결정을 말함(협정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합의의사록)

### 나. 살인 등 12개 중요범죄는

① 살인
②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포함)
③ 석방대가금 취득 목적의 약취·유인
④ 불법 마약거래
⑤ 유통 목적의 불법 마약제조

⑥ 방화

⑦ 흉기강도

⑧ 상기 범죄의 미수

⑨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⑩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⑪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⑫ 상기 범죄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중한 범죄

'04. 5. 15 02:00 서울 서대문 창천동 노상에서 피의자 존 ○○(21세, 미8군 17항공대 소속)가 동료(미군 5명, 카투사 1명)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박○○(27세, 회사원)의 목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군용칼(길이 25㎝)로 찔러 상해(길이 3㎝, 폭 4㎝)를 가함

**⇒ 112 신고후 피의자 검거, 미 헌병대에 피의자 신병인계, 이후 출석요구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살인미수 혐의는 12개 중요범죄에 해당되어 검찰이 기소시 구금인도 요청하여 구속 기소한 바 있음**

## 10. 사건송치

가. 조서작성 단계에서 미군은 한국에 재판권이 없음을 항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증명서(주한미군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행)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판권의 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임을 설득시키고 일단 피의자를 신문한 뒤 제출된 공무집행증명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송치



나. 중요사건 송치시 미군헌병대 또는 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한 진술서(번역문 포함)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송치하는 것이 좋음

◦ SOFA협정 및 관련 부속문서 등에 의하면 송치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한국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미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 미군당국은 통고받은 때로부터 21일 이내에 한국정부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여야 하고, 한국정부는 재판권 포기요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장(연장요청기간 14일 포함) 42일 이내에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절차를 고려하여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 < 송치서류 편철순서 >

- ㅇ 사건송치서
- ㅇ 압수물 총목록
- ㅇ 기록목록
- ㅇ 의견서
- ㅇ 기타서류(이하 편철순서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의함)
  - 발생보고
  - 현행범인체포보고
  - 현행범인체포서
  - 확인서
  - 체포, 구속전심문신청권, 구속통지
  -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압수물가환부 청구
  - 압수물가환부 지휘건의
  - 압수물가환부 영수
  - 피해자 진술조서
  - 구금인도요청서
  - 출석요구서
  - 미국 정부대표 임명장
  -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조서(참고인)
  - 범죄인지보고
  - 공무수행증명서



## 〈 SOFA 사건 처리시 경찰서 점검항목 〉

| 단계 | 점 검 항 목 | 확인 | | 비고 |
|---|---|---|---|---|
| | | YES | NO | |
| 기초사실조사 | SOFA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 | 소속, 계급, 성명, 나이, 범죄사실 등 범죄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증거조사 등 예비수사는 하였는가 | | | |
| | 지방청에 보고 하고 24시간 이내에 검찰청(SOFA 담당검사)에 SOFA 사건 발생보고 하였는가 | | | |
| 미군통고 | 미군부대 헌병감에게 피의자 체포사실을 즉시 통고하였는가 | | | |
| 신병인도 |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였는가 | | | |
| | 미국 정부대표 입회하에 신병인도 전 조사를 하였는가 | | | |
| | 미군 당국으로부터 '구금인도 요청서'를 제출받고 '신병인수증'을 접수하였는가 | | | |
| | 피의자가 체포 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현행범은 아닌가 | | | |
| 출석요구 | 관할 미헌병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가 | | | |
| |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적극적으로 출석요구 하였는가 | | | |

| 단계 | 점 검 항 목 | 확인 | | 비고 |
|---|---|---|---|---|
| | | YES | NO | |
| 피의자조사 | 미국 정부대표의 '대표임명장'은 접수하였는가 | | | |
| | 통역인은 참여하였는가 | | | |
| | 변호인 선임여부 의사를 확인하였는가 | | | |
| | 조서는 한국어로 기재하고 소속과 성명은 영문으로 병기하였는가 | | | |
| | '피의자 신문조서'에 '부대명·계급·성명·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였는가 | | | |
| |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입회한 통역과 미국 정부대표의 서명날인은 받았는가 | | | |
| 체포후 계속 구금 | 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현행범을 체포 후 계속 구금할 경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실시하였는가 | | | |
| 사건 송치 | 미군헌병대 또는 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한 '진술서'도 수사서류에 첨부하였는가 | | | |



# 제3절 단계별 처리도 및 사례

## 1. 사건 처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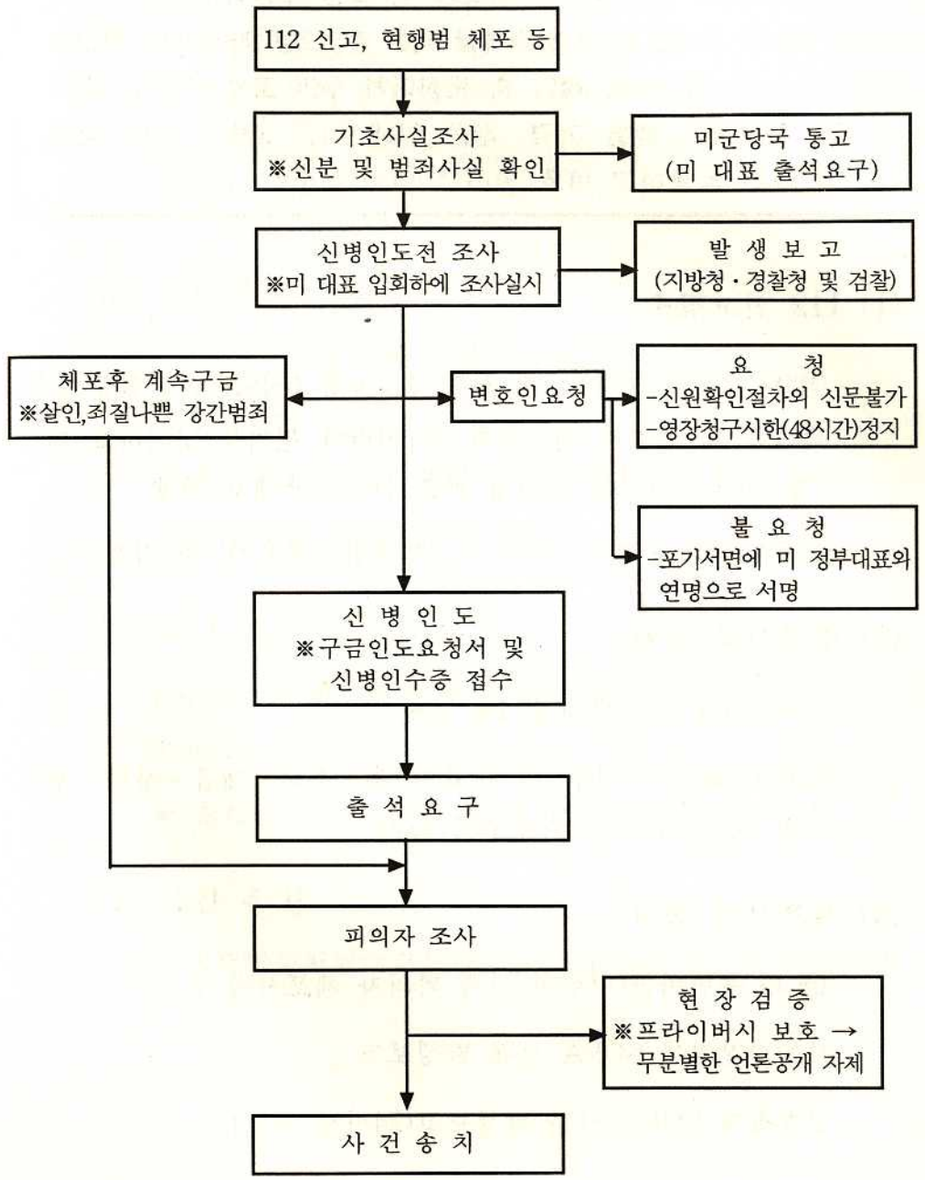

## 2. SOFA 사건 처리사례

### 가. 주한미군 폭행사건

'04. 7. 11. 04: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미국인 영어강사 멜ㅇㅇ(24세, 여)가 튀김류를 먹은 후 그냥 가려하자, 튀김값 지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포장마차 주인 조ㅇㅇ(35세, 남)이 멜ㅇㅇ를 잡은채로 뺨을 가격, 같은 일행 미군 3명이 이에 격분 조ㅇㅇ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내국인 6명도 폭행

#### (1) 112 신고접수

- 04:00 마포서 홍익지구대 경위 김ㅇㅇ등 6명이 즉시 현장 출동,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미군 3명, 아국인 1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
- SOFA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현행범인체포서' 등 작성

#### (2) 경찰서로 동행

- 07:45 마포서로 피의자 4명 동행
- SOFA 대상자 여부 재차 확인 후, 소속·계급·성명·생년월일·범죄사실 등 기초조사 실시

#### (3) 체포사실 통고

- 08:45 주한미군(미헌병감)에 피의자 체포사실 통고
- 서울경찰청에 SOFA 사건 발생보고
- 검찰청에 SOFA 사건 발생보고(24시간 이내)



#### (4) 신병인도 전 조사

- 11:13 미헌병대 마포경찰서 도착
- 14:20 미국 정부대표 출석

※ 미국 정부대표는 수사기관의 요청시 1시간 이내에 출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국 정부대표 입회하에 작성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14:30~19:30 '대표임명장' 접수 후, 미국 정부대표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5) 신병인도

- 19:15 미헌병대에 피의자 신병인계
- 책임장교가 서명한 '구금인도요청서' 및 '신병인수증'(피의자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명기)을 수령 후, 미군당국에 피의자 신병인도

#### (6) 출석 요구

미군당국에 피의자 인계 후라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적극적 수사활동 전개

☞ 출석은 가급적 48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줄 것

#### (7) 사건 송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나. 신촌 미군흉기 난동 사건

| |
|---|
| ○ 심야에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던 미군 피의자를 체포 후 기초 사실 조사 후 미군당국에 신병인계하고<br>○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출석요구 등 적극적 수사로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 |

### (1) 사건 개요

'04. 5. 15. 02:0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노상에서 피의자 존 ○○(21세, 미8군 17항공대 소속)가 동료(미군 5명, 카투사 1명)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박○○(27세, 회사원)의 목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군용칼(길이 25㎝)로 찔러 상해(길이 3㎝, 폭 4㎝)를 가함

### (2) 사건 진행사항

- '04. 5. 15. 06:00 미군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등 기초조사 후 미8군 헌병대에 신병인계
- 목격자 등 참고인, 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
- 피의자 출석요구하여 2차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찰에서 '04. 8. 2. 미군으로부터 신병인도 받아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수감 (징역 2년 6월 실형선고)



### (3) 교 훈

- 신고접수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건현장의 유류품을 확인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 확보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

- 피의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 기초조사 후 미군에 피의자 신병을 인도하고, 참고인·피해자 조사 및 피의자 출석요구하여 신문조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수사로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SOFA 사건 발생시 한국경찰이 미정부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면 1시간 이내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정부대표 미17항공여단 ○○○ 대위가 출석하지 않아 신속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어려웠으므로

  평소 미헌병대와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SOFA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미정부대표의 출석을 요구해야 할 것임

< 미군 피의자 흉기난동 현장 >

## 다. 마약 소지·흡연 미군가족 구속사건

마약소지·흡연 혐의로 미군 가족을 체포 후 미군당국에 신병 인계하려 하였으나, 미군이 '피의자 신병인도 포기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 체포 후 계속 구금 수사한 사례

### (1) 사건개요

'04. 4. 15.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의자 콴ㅇㅇ(21세, 남)이 미국인 노잘 ㅇㅇㅇ(47세, 남)가 구입한 대마를 보관비를 받고 보관·소지하고 있던 중, 6. 15~16. 주거지 주차장에서 2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임

### (2) 사건 진행사항

- '04. 7. 7. 피의자 긴급체포 후, 미군 당국에 체포사실 통고
- 7. 8. 미정부대표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7. 9. 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본부 범무참모가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수 포기서' 제출하여 피의자 구속수사 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송치

### (3) 교 훈

- 미군가족도 SOFA 대상자인 바, 체포시 미헌병대에 체포사실 통고하고
- 미군당국이 '신병인도 포기서'를 제출하여 경찰에서 체포 후 구속수사한 사례로
- 구속 사안의 경우, 미군에서 피의자 신병인도를 포기할 경우, '신병인도 포기서'를 제출받아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임



## 라. 오산 미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 ㅇ 사고현장에서 유류품 등 증거물 확보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후 미군당국과 공조하여 피의자를 조기검거하고
- ㅇ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 확인,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기소시 구속한 사례

### (1) 사건개요

'03. 11. 28. 00:10경 경기 오산시 원동 소재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된 미군 온ㅇㅇ(33세, 6기갑여단 소속)이 송탄에서 수원방향으로 차량 진행 중 신호위반하여 수원에서 오산 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한국인 차량을 충격, 운전자를 사망케 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

### (2) 사건 진행사항

- '03. 11. 28. 00:10경 112신고 접수 후 화성서 중부지구대 현장출동

  피의자가 버리고 도주한 가해차량에서 미군 신분증과 철모 등 확보하여 피의자 신원확인, 미군 헌병대와 공조하여 차량주소지 확인

- 11. 28. 05:30 미헌병대 협조하에 미군시설 출입, 부대내에서 취침중인 피의자 검거
- 미군헌병대와 합동조사 실시하여 피의자진술서 작성 및 피의자로부터 혈액채취 동의서 받고 혈액채취
- 미정부대표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3) 교 훈

- 현장 유류품에 대한 철저한 수색으로 미군신분증과 철모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도주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하였으며

- 피의자 소속 미군부대와 협조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미군시설내에 출입하여 피의자를 조기 검거할 수 있었음

- 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야 할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혈액채취동의서'를 받고, 채혈하도록 하여야 함

- 피의자에 대해 수사 후, 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는 바, '교통사고로 사망초래 후 도주 사건'은 기소시 구속할 수 있는 12개 중요범죄에 해당하여 검찰에서 기소시 피의자 구속하였음



# 제 3 장 SOFA 사건 수사시 유의사항

제1절 일반적 유의사항

제2절 죄종별 유의사항

# 제3장 SOFA 사건 수사시 유의사항

## 제1절 일반적 유의사항

### 1. 범죄현장 수사

가. SOFA 적용대상 범죄현장에서 미군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 측의 협조를 얻어 독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용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

나.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때에는 미군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현장조사를 희망할 경우 협조 제공

### 2. 현행범 체포 등을 위한 미군시설 출입

가. 미국 군대의 관계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 가능

☞ 미군 당국과 협조하에 미군시설에 출입하거나 미군 당국에 피의자의 체포를 요청

> 우리나라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군 당국은 우리나라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협정 제22조 제10항 (가),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나. 미군시설 내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경우에는 미군당국(관할 미군헌병대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함

※ 미군시설내 압수·수색·검증시, 건물주 등에만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미군부대 헌병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의

## 3. 무죄추정의 원칙과 프라이버시 존중

가. 수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촬영 또는 언론보도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프라이버시와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나. 특히, 사진기자 등을 수사기관 내부로 초청 피의자 등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거나 면담토록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4. 체포·구금된 피의자의 권리 존중

###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피의자가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절차 등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 및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

### 나.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피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다. 미국 대표와의 접견권 및 미국 대표의 참여권

체포 또는 구금시부터 수사의 모든 절차에 인정되며, 미국 정부대표 불참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음



## 5. 수사관련 자료 등 제출협조 및 분쟁조정

가. SOFA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미군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자료, 장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군에 자료제출 협조 요청

나. SOFA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SOFA 담당검사가 미군 법무감 등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

## 6. 손해배상

가. 교통사고·폭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이 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비록 미군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더라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 등의 진술서, 진단서 및 기타 증거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

나. 형사부분에서 미군의 범행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에 유리하며, 손해배상 지급여부가 형사상의 판결에 영향을 줌

다. 공무수행 중 주한 미군이 발생시킨 청구권 손해배상은 미군당국이 75%, 한국 당국이 25%를 분담

>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퍼센트'를, 미국이 그의 75 '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협정 제23조 제5항 (마)의 (1))

# 제2절 죄종별 유의사항

## 1. 폭 력

> ○ 폭행사건으로 합의시에는 한국어로 된 합의서 이외에 영문 합의서도 함께 첨부
>
> ○ 쌍방 폭력사건으로서 미군이 상해를 입고 미군병원에 입원한 경우 미군병원측으로부터 진단서 입수
>
> ○ 미군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상에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군진단서를 가지고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기간에 관한 소견서를 받아 첨부

○ 2인 이상이 현장출동, 일반 경찰장구 외에 통신장비도 휴대

○ 현장출동 도중 미군 등을 발견하게 되면 인상특징을 메모하여 두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싸움으로 인해 옷이 찢어지거나 피가 묻어 있는 등 폭력과 관계된 흔적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추후 수사에 대비

○ 부상자 구호 및 증거물·목격자 등 참고인 확보, 추후수사 대비

## 2. 절 도

> 현장출동 도중 미군 등을 발견하게 되면 인상특징을 메모하여 두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 현장관찰 및 탐문은 피해자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그 주변까지 행하여 목격자 등 정확하고 효과적인 수사자료 수집

○ 현장관찰 결과는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흐트러진 모습 등 필요한 경우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보존 조치

○ 함부로 현장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 도주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착의, 휴대품, 도주방향 등을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하여 긴급배치 하는 등 효과적으로 도주로 차단

○ 현장부근에서 정확한 목격자 등의 확보에 힘써 피의자의 인상 착의, 체격 등 특정

○ 장물수배 등 추후수사에 대비, 피해품 종류·수량·제작회사·색깔 등 특징 파악

## 3. 사기 등 지능범죄

> 지능범 사건 접수시는 되도록 신속히 주무부서로 통보하여 전문 기능에서 처리되도록 함이 바람직함

○ 사기, 횡령, 배임, 위·변조 등 이른바 지능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잠재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자, 피해자 등에게 함부로 법률적 견해를 밝히지 않도록 함

○ 평소 지능범에 관한 법령 등 기본지식 습득토록 노력

## 4. 살 인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시, 미군의 1차적 재판관할권이 아닌 경우 구속의 이유와 필요가 있을 때는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 ㅇ 범죄현장 출동 시 휴대용 무전기를 휴대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파
- ㅇ 메모지, 현장보존용구, 손전등, 장갑, 분필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장비 휴대
- ㅇ 현장출동 중에도 미군 등을 발견하게 되면 인상특징 등을 메모하여 두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옷이나 손발 등에 혈흔이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한 상처 등 범행과 관련된 흔적 발견에 노력. 단, 현장임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 ㅇ 함부로 현장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사진촬영 등 조치
- ㅇ 도주시 시간경과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인상착의, 휴대품, 도주 방향 등을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

## 5. 강 도

현장출동 중에도 미군 등을 발견하게 되면 인상특징 등을 메모하여 두거나, 불심검문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옷이나 손발 등에 혈흔이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한 상처 등 범행과 관련된 흔적 발견에 힘쓰도록 함

- ㅇ 반드시 경찰장구 외에 통신장비도 휴대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ㅇ 메모지, 현장보존용구, 손전등, 장갑, 분필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장비 휴대
- ㅇ 함부로 현장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사진촬영 등의 조치
- ㅇ 도주시 시간경과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인상착의, 휴대품, 도주 방향 등을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
- ㅇ 장물수배 등 추후수사에 대비, 피해품 정확히 파악

## 6. 강 간

죄질이 나쁜 강간 현행범의 경우 신병을 미군당국에 인도하지 않고 구금 후 계속 수사 할 수 있음

- ㅇ 여성피해자 진술내용을 맹신하여서는 안되며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여자경찰관을 입회시키거나 여자경찰관으로 하여금 진술청취
- ㅇ 최대한의 물증확보
- ㅇ 화간(和姦)여부의 신중한 판단
- ㅇ 고소권 및 고소경위 확인
- ㅇ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7. 마 약

마약류 사범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순간적 발작을 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초기에 제압

○ 장기간 중독된 경우 뼈속에 칼슘이 빠져나와 석회질화되어 있어 약한 충격에도 손가락 부위가 잘 부러지는 등 가혹행위 논란 소지가 다분하므로 검거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함

○ 범인 조사시 책상 위에 자해할 수 있는 송곳, 칼, 볼펜, 재떨이 등 사소한 물건도 조심

○ 피의자에 대해 기초적으로 모발 및 소변채취 승낙서와 증거물 등 확보

## 8. 교통사고

○ SOFA 대상자의 자가용인 경우 대부분 종합보험이 아닌 한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없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

○ 미군 또는 군속이 범한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가 공무수행 중이거나 아니더라도 25,000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한 피해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입건하지 않음

○ 교통사고 처리시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미군헌병을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실시, 차후 범죄사실 부인에 대비

○ 3회 음주측정 요구(10분 간격)에 불응하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형사입건하되, 미국 정부대표 또는 미국 헌병 참석하에 우리측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입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들의 진술서, 진단서 및 기타 증거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



# 제 4 장 외국인 피의자 처리요령

제1절 외교사절에 의한 범죄 처리요령

제2절 일반외국인 범죄 처리요령

# 제4장 외국인 피의자 처리요령

## 제1절 외교사절에 의한 범죄 처리요령

### 1. 대 상

주한외교사절을 비롯하여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

### 2. 외교사절의 특권

가. 신체의 불가침

나. 주거, 서류, 통신, 재산 등의 불가침

다. 접수국의 형사·민사·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라.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으로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 향유

### 3. 범죄 처리요령

#### 가. 외교관 신분확인

소지한 신분증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외교통상부에 조회하거나 외교통상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외교관명단(Diplomatic List)을 통해 확인